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종호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9년 6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, 도지사의 지도·감독권한을 구체화 등 의료원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(안 제3조제3항 단서)
-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(안 제6조)
-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(안 제7조)
- 도지사의 지도·감독 권한 구체화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임원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, 도지사의 지도·감독권한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,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(안 제3조제3항단서)

- 임원의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당연직 이사는 추천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킴.

나.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(안 제6조)

- 의료원 상호간 의료 인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균형 있는 인력 배치로 의료발전에 기여함.

다.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(안 제7조)

-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 함.

라. 도지사의 지도·감독 권한 구체화(안 제10조)

-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, 인사와 보수, 중요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·감독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구체화 함.

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명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원간 상호협의를 통한 인사교류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원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을 명문화하고,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